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
항에 따라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 경우 추계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의안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개정안 취지를
살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